

수원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2279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9. 6. 19. 접수 제597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곽용현

[별지]

부동산 목록

1동 건물의 표시

수원시 권선구 , 번라[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층 호 60.89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수원시 권선구 대 147.2평방미터2. 수원시 권선구 대 184.1 평방미터

대지권의 비율 : 392분의 39.7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1,2소유권

- 이 상 -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09. 6. 19. 소외 D 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공증인가 E 합동법률사무소 증서2009년1002호 약속어음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소외 D 으로부터 2011. 6. 2. 접수52854소 근저당권자가 피고로 바뀌었습니다.
(갑제1호증 약속어음 공증통지서 첨부.)
2.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소외 D 과 피고에게 원금을 조금씩 변제완료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을 완제를 하였기에 당연히 근저당권 말소가 되었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3. 원고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집을 매매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고,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찾아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찾아갔지만 피고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바 2019. 12. 5. 해산 및 청산종결 된 회사였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청산종결 되었기에, 원고는 본 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